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형태
- 언론침해에 의한 구제제도 -

김 오 수
판사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금전배상과 명예회복처분은 어느 것이나 사후적인 구제수단이어서,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용이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인격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사전 억제인 방해예방청구권 및 이미 발생하여 계속중인 침해행위의 정지·제거인 방해정지·배제청구권(이를 합하여 금지청구권이라고 부른다)을 인정할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

I. 서설

1. 언론침해와 구제문제

오늘날 언론에 의한 개인의 법익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은 한편으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리 내지 법익의 침해는 주로 정신적 측면의 인격권 침해, 특히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나타난다.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개인이 입은 피해의 보상, 즉 그의 권리구제수단이 문제가 된다.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문제는, 한편으로 거대화 한 언론기관과 일개 시민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힘의 격차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결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2. 구제제도일반

(1) 민사상 구제

언론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서는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처분의 구제권, 그리고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사후 구제수단이지만, 그밖에 사전구제수단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방해예방 등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형사상 구제

명예·신용 등의 훼손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에 보호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의하여 심리적 보상효과를 얻게 되는 점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상 제재는 원래 행위자를 처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처벌대상도 개인이지 언론기관 자체는 아니므로, 피해자구제의 수단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1) 그밖에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위법한 언사와 허용된 자유로운 언론과의 한계가 미묘하고, 또 명예훼손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의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억제 · 진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2)

(3) 언론의 자율규제

언론은 스스로도 신문윤리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를 두고 피해자의 제소 등에 따라 인권침해의 보도 등을 심의하여 회원사에게 사과 · 정정 · 해명 · 취소 등을 명하는 방법으로 언론침해행위를 자율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의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신문윤리위원회 ·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은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할 것이 기대될 뿐,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언론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는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3)

3. 검토범위의 한정-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제도

물론 민사상 구제제도에 대하여도 민사재판의 현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형사상 구제나 언론의 자율규제가 제도자체의 성격상 언론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국 민사상의 제구제 수단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다만 그 구제절차 내지 방법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이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정신적 측면의 인격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늘날 이러한 인격권의 보호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언론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검토범위를 한정하여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먼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측면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구제 내지 피해보상의 제도를 차례로 본다.

II.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

1. 성명권 침해

우리나라에는 성명권이나 뒤에 나올 초상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으나 이들이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이 무단히 또는 조건에 위반하여 광고 등에 이동되는 경우에 성명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4)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종래에는 초상권을 인격권의 면에서만 이해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이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에 착안하여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다(특히 유명한 영화배우 등의 사진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5) 초상권의 침해는 특히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6) 정치가 등 유명인의 초상권은 어느 정도 제한되며, 데모행진과 같은 공공의 행사에 참가한 자는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나, 어느 경우에도 보도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남을 것이다.7)

3. 명예·신용훼손

(1) 의의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므로,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문제는 신용을 명예의 일종으로 보아 신용훼손을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다. 명예가 비재산적 이익임에는 다툼이 없지만, 신용이 비재산적 이익인가는 의문이고, 신용은 원래 재산적 거래에 관계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받는 평가라는 점에서 명예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8)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모두 신용을 명예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

(2) 위법성의 판단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한다면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 내지 불법행위의 성부는 피해자의 신분이나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9)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위법성을 가지게 되는냐는 매우 미묘하고 곤란한 문제이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두 가지 대립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모아진다. 그리고 그 조정기준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진실성의 증명」과 「공정한 논평」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3) 피해자에 관한 문제

법인에 관하여서도 당연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 실제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영업상의 명성·신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0) 판례도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11) 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자는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자 자신은 원칙으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4)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양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보도·논평·픽션물 광고에 의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도의 경우에는, 오보이든 허보이든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직접 취재기사가 아닌 전문취재·전문보도 또는 인용보도의 기사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법률상 어떠한 면책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¹³⁾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본문과는 관계없이 기사표제나 전문만에 의한,¹⁴⁾ 또는 사진설명의 기사에 의한,¹⁵⁾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다.¹⁶⁾ 논평·해설은 다시 사내집필에 의한 것과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원고, 독자투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내집필에 의한 논평이외의 것에 대하여도 투고의 채부, 취사선택의 권한은 전적으로 언론사측에 있으므로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¹⁷⁾ 논평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에 관한 것 외에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보도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있고, 한층 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¹⁸⁾ 픽션물의 대표적인 것은 연재소설·연속방송극 등이고, 이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예술활동의 자유와도 관련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여 씌어진 모델소설의¹⁹⁾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 외에 뒤에 나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끝으로 광고의 제작 게재에 관하여는 광고주·대리점·언론사의 권한이 미묘하게 얹혀 있어서, 광고에 의한 명예·신용훼손의 경우 어디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²⁰⁾ 일반적으로 말하면, 광고는 여론형성 등 언론의 공적 과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²¹⁾ 적어도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각종 의견광고에 대하여도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이란 한마디로 「혼자 있을 권리」「사사를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또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²²⁾ 이 권리는²³⁾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헌법차원의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헌법 제 16 조).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시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종래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명예훼손으로만 취급되어온 경향이 있다.²⁴⁾ 그러나 ①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그 요점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평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② 명예훼손은 진실의 증명이 있으면 면책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의 증명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③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을 수 있으나 법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점등에서 양자는 구별된다.²⁵⁾ 프라이버시권 역시 언론, 특히 상업지화 한 주간지 등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 권리이고, 이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보도에 의한 경우, 특히 유명인에 관하여는 자연히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눈에 숨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은 존재한다. 또 모델소설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의 자유와의 조화가 문제로 되지만, 보도의 경우에 비하여 그 공익성은 떨어진다.²⁶⁾ 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정기준으로서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된 두개의 법리, 즉 「공공의 이익」과 「공적 존재」의 이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⁷⁾

III. 손해배상

1. 금전배상

언론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다른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 763 조, 제 394 조). 금전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로 구별된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후자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침해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침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함은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2. 재산적 손해의 배상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생기는 일도 드물지 아니하다. 예컨대 오보기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도산하거나 현저한 영업부진에 빠지는 경우의 영업상의 손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손해액의 산정도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명예나 신용훼손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²⁸⁾ 다만 입증 곤란한 재산적 손해는 다른 사정과 함께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3. 위자료

(1) 위자료의 본질과 기능

위자료가 손해배상인가 일종의 사적 제재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설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 또는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 이해하고, 이들 손해는 무형적인 정신적 · 육체적 고통으로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공평의 개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³⁰⁾ 그러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성격 내지 기능이 재산적 피해배상의 그것과 다른 점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즉 위자료는, 독일의 판례가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바와 같이, 손해전보기능 외에 만족적 기능을 가진 다는 점에서 재산적 손해의 배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³¹⁾ 만족적 기능이란 피해자가 배상금수령에 의하여 얻는 심리적 위안 또는 복수심, 진정의 효과를 말한다.³²⁾ 이 때문에 위자료는 비록 약간이나마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후적 일반예방의 목적에도 봉사하는 것이며,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사정, 특히 가해의 동기, 고의 · 과실의 정도, 침해행위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³³⁾

(2) 언론의 인격권침해와 위자료

언론침해의 피해법익은 주로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인 까닭에 그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액의 산정은 생명·신체침해의 경우보다 더욱 곤란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사례자체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의 한계에서 당사자사이에 화해 등으로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판례의 집적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액은, 최근의 고액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다.³⁴⁾ 교통사고의 증가와 함께 정형배상적 사고가 유력해지고, 법원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일정한 위자료기준을 마련하여 정형적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위자료액이 현저하게 고액화 한 것과 비교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³⁵⁾ 과거의 판례에 나타난 위자료 인용액은 최고 150 만엔 정도이고, 수만 엔 내지 50 만엔 미만이 압도적이며, 피해자 1 인당 평균 위자료액은 45 만엔 정도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³⁶⁾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수준은 미국의 그것³⁷⁾과 자주 비교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위자료액이 신체상해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하며, 오히려 인격의 가치에 비하여 신체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다는 비판도 있는 듯하다. 이는 정신적 측면의 인격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과 일반예방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어야 한다는 데에 연유하는 것 같고(그밖에 잠재적, 재산적 손해가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과거 표현범죄에 대한 과소한 벌금형이 그러한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주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도 한다.³⁸⁾ 그러나 그 위자료의 수준(1970년대 전반에 1 만 내지 5 만 마르크) 역시 언론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³⁹⁾ 생각컨대, 법원이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인정하는 위자료액이 일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언론과의 대결을 꺼리는 일반적 경향과 함께 이 방면의 사건은 대개 그 사안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해자측에게 사전주의의무와 사후시정조치를 더욱 소홀히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⁴⁰⁾ 그러므로 특히 인격권 존중의 사고가 아직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유효한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3) 위자료의 산정

언론침해에 대한 위자료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① 침해의 양태·정도·위법성의 강약 • 언론침해의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평가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⁴¹⁾ ^② 피해자의 양태: 사회적지위 · 신분이나 직업 · 재산상태 ⁴²⁾ 등. ^③ 가해자측의 양태 : 매체의 종류, 기사의 게재지면이 전국판인가 지방판인가, 발행부수 등 공표범위의 광협 등.⁴³⁾ ^④ 가해의 동기,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후의 가해자의 태도, 다른 청구의 인정 여부 등: 가령 오보기사의 게재 후 속보등에

의하여 오보를 사실상 정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사죄광고게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이 현저하게 감액될 수 있을 것이다.44)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손해액의 산정곤란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도 위자료의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⑤ 침해행위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4) 법인 기타 단체의 무형손해의 배상

법인 기타 단체에는 자연인과 달리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인등에 관하여서도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때에는,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만 그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재산이외의 손해」(민법 제 751 조)라는 의미에서의 무형손해의 배상은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는 그 입증곤란으로 배상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을 것이므로, 법인등에 대하여 무형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실례상 필요성도 있다.45)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판례역시 이를 인정하는 것 같다.46)

IV. 명예회복처분

1. 명예훼손의 원상 회복적 구제

민법 제 764 조는,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즉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만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편 적당한 처분에 의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7)

2. 명예회복처분의 종류

명예를 회복함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신문·잡지에 의한 사죄광고(48)의 게재이고, 특히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언론침해의 경우 그 밖의 회복처분으로서는 법원에 의한 명예회복건언·피해자승소판결의 신문 게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49) 사죄광고는 보통, 특정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장소 활자의 크기를 특정하고, 광고의 내용을 정하여, 그 게재를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크게 사죄광고라고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문자 그대로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사죄광고와 명예훼손행위를 취소함에 그치는 취소광고가 있다.50) 그리고 전자의 사죄광고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그것이 피고의 이름으로 사죄광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피고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헌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판례(51), 단지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사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윤리적 의사·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은 양심의 외적 자유 내지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붙어있고, 학설상으로는 위헌이라는 설이 적지않다고 한다.⁵²⁾ 다만 신문사와 같은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내심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에게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⁵³⁾의문이다. 생각컨대, 사죄광고의 강제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사죄광고의 강제가 합헌이라는 것과 그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므로,⁵⁴⁾ 사죄광고의 강제는 침해행위의 반사회성의 정도가 특히 강한 경우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⁵⁵⁾ 그밖에는 단순히 원문기사의 취소광고를 명하든가⁵⁶⁾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의 요지를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광고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⁵⁷⁾

3. 명예회복처분을 명하는 요건 · 내용

(1) 피해자의 청구

명예회복처분은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명할 수 있다.⁵⁸⁾ 법인인 피해자도 회복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⁵⁹⁾ 피해자는 명예회복처분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인 세부사항(사죄·취소광고의 경우 활자의 크기 등)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사죄 · 취소광고의 경우, 광고의 전문·게재할 매체의 특정 등 법원의 판단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가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이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⁰⁾

(2) 금전배상과의 관계

명예회복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는가 어느 일방만을 명하는가는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한다.⁶¹⁾

(3) 명예회복처분의 타당성

명예회복처분은 그 기능에 비추어 이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판결에 의하여 이를 강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⁶²⁾ 여기에서 먼저,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로 기사표제만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오직사건의 보도에서 오직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밖에 부수적으로 쓰여진 부분에만 잘못이 있는 경우에 사죄광고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하급심 판결이 있다.⁶³⁾ 다음 신문측이 자발적으로 취소기사를 게재한 것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명예회복처분의 필요성이 나중에 소멸된 경우인데, 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구두변론 종결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일단 훼손된 명예가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가해행위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도 명예회복처분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⁶⁴⁾

(4) 사죄·취소광고의 매체

사죄 취소광고의 경우 그 매체로서는 통상의 일간신문(그것은 다시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누어진다)이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주간지 · 월간지 · 특정의 업계지 등도 선택될 수 있다. 이들 매체는 가해자인 피고자신이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 3 자가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각종 매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체가 가지는 전달능력과 전달대상을 기초로 하여, 침해된 명예 등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방법이 어느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정한다.⁶⁵⁾ 신문·잡지의 게재기사가 명예훼손으로 되는 경우 당해 신문등에 한정하여 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 일본판례의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문·잡지에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전파력은 그 신문 등의 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널리 사회일반에 광고가 알려지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⁶⁶⁾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매체와 다른 매체에 광고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를 부정한 것⁶⁷⁾이 있으나, 명예회복청구의 소송물은 명예를 회복함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위 판결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있다.⁶⁸⁾

(5) 사죄 · 취소광고의 내용 · 방법

사죄광고의 청구에 대하여 취소광고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 광고문의 표현을 완화하는 것, 활자의 크기 · 게재지면 · 게재횟수 등을 청구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변경하는 것 등은 청구의 일부 인용으로 볼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청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⁶⁹⁾ 일본에서는 법원이 사죄광고 게재요구에 대하여 거치 예외없이 광고문의 표현을 완화하거나 기타 여러 각도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며,⁷⁰⁾ 사죄 취소광고의 어느 것도 아닌 「정정기사」의 게재를 명한 판결⁷¹⁾도 있다.

4. 그 밖의 소송상 · 집행상의 문제

(1) 소가

사죄광고청구소송은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그 소가는 광고게재에 요하는 통상의 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⁷²⁾

(2) 사죄 · 취소광고를 명한 판결의 집행

이에 관하여는 피고자신이 지배하는 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것을 명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통상 전자의 경우에는 간접강제,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⁷³⁾

5. 다른 인격권의 침해와 회복처분

성명권 · 초상권 ·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동시에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비하는 때에는 물론 회복처분이 인정되겠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74)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이를 긍정하는 설도 있으나,75) 이 경우에는 사죄광고 등에 의하여 침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새로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V.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1980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된 언론기본법 제 49조 제 1항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그 규정의 제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 권리의 실제내용은 언론의 공표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주장 내지 의견을 게재하여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내용의 권리는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부정확 내지 부적절하고, 반론권 내지 응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래의 보도나 반론내용의 진부가 원칙상 문제되지 않고, 보도의 위법성이나 언론기관의 고의·과실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재판은 가처분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민사상 구제방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특징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가장 신속·간이하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일반국민에게 이 권리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에는 점차로 이에 관한 사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내용·행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본지 1호 18p. 이하(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와 본지 5호 10p. 이하(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에 비교적 상세하게 해설되어있으므로 이에 미루고, 여기에서는 더이상 다루지 않는다.76)

VI. 금지청구권

1. 금지청구의 필요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금전배상과 명예회복처분은 어느것이나 사후적인 구제수단이어서,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용이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인격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사전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사전 억제인 방해예방청구권 및 이미 발생하여 계속중인 침해행위의 정지·제거인 방해정지·배제청구권(이를 합하여 금지청구권이라고 부른다)을 인정할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77)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문제는 법원의 금지명령, 특히 사전억제조치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특히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되기 어려운 성격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법적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는 특히 연재기사나 연재소설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78) 그러나 그밖에도 명예·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사나 무단 촬영된 초상사진이 게재 또는 공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론 그 사전억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언론에 대한 관계에서는, 성명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문제는 통상 생기지 않을 것이며,79) 초상권에 기한 금지80)역시 그것만이 따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 경우에는 그 성질상 프라이버시의 경우에 준하여 보면 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명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금지청구의 법적근거

우리나라와 같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금지청구의 인정여부 또는 그 인정범위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많다. 우선 권리의 불가침성 내지 방해금지성에 착안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도 널리 방해의 예방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81) 법원의 금지명령은 「검열」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특히 사전적 금지 또는 간이·약식의 사법절차인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82) 그러나 오늘날 다수설과 판례는 「일정한도」를 넘는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적 금지도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83) 다만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보호의 대상인 인격권의 권리성 내지 절대권성에 구하는 입장(권리설)과 위법행위라는 사실의 평가 그 자체로부터 금지청구권을 도출해내는 입장(불법행위설)으로 대별된다. 보호대상의 명확화와 금지요건의 단순·확일화의 점에서는 전자가 우수하지만, 새로운 사회현상への 탄력적 적응이라는 면에서는 후자가 낫다.84)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자체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또 어떠한 요건 하에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금지청구의 요건

(1) 일본의 학설 · 판례

금지청구권 인정의 요건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비교형량론- 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의하여 생기는 가해자측의 손실(불이익)과 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의하여 받는 피해자측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금지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85)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침해에 의한 인격적 손해와 가해자의 금지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함께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형량의 결과 어느 정도의 차가 있을 때 금지가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86)

② 고도의 위법성론- 권리침해의 위법성이 고도인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입장87)이다. 이 설은, 위법성의 강약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애매한 개념이고, 법관의

개인차에 따라 그 인정의 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위 ①설과 비슷한 비판을 받는다.88)

③사실의 공공성·진실성, 행위자의 의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입장-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는 헌법상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극히 한정적·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행위(주장)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며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일 때에만 금지가 허용된다고 한다.89) 이 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판례법 90)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가중적인 요건으로 한 것은 명예훼손에는 타당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91)

(2) 요건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나 프라이버시 역시 헌법상 보호를 받는 권리 내지 이익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92)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의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인격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사후구제 수단인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은 피해의 전보 내지 회복에 그 목적이 있으나, 금지청구의 목적은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에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9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또 앞서 본 일본의 학설판례와 독일에서 인정되는 부작위의 소의 요건 94)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청구의 요건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침해행위의 계속성 또는 급박성 : 전자는 방해의 정지 또는 배제, 후자는 방해예방청구의 요건이다.

② 침해행위의 위법성: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여기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공공성·진실성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③ 가해자의 고의 ·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95) 객관적으로 위법한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함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가처분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상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고 또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기도 한 가처분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96) 그런데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는 특히 사전억제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으므로,97) 가처분요건의 인정에는 특히 엄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98) 보전의 필요성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그 손해는 금지에 의하여 가해자가 입을 손실보다 커야 하며(이익교량),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구제수단에 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명예 갈음하는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99)

4. 금지청구권의 행사방법

금지청구권의행사의 방법은 침해행위의 상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부작위청구(가처분의 경우에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사 경우에는 기사의 게재중지, 기사가 게재된 잡지의 발매, 반포의 금지 또는 정지, 사진촬영에 의한 촬영권 침해의 경우에는 필름의 파기나 사용금지 등이 될 것이다.¹⁰⁰⁾

의무명의를 집행은 부작위의무의 집행방법에 의한다. 의무위반이 아무런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침해대상을 구할 수 밖에 없지만,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한, 법원은 민법 2-389 조 제 3 항, 민사소송법 제 692 조에 의하여 그 위반된 것을 제거하고 기타 의무위반의 반복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금지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¹⁰¹⁾

<주>

- 1) 이상희, "텔레비전 보도와 시민의 권익", 「언론중재」, 1982, 봄. p.48.
- 2) 五十風清, 田宮裕, 명예와 프라이버시 유비각쌍서, 1975 년, pp.75~78.
- 3) 이상희, 전계논문, pp.49~50.
- 4)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10 편, 법원행정처 1979 년, p. 211.
- 5)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여름, pp. 6~7.
- 6) 「언론중재」, 1982, 여름, 특집 I "사진보도와 초상권", 참조. 언론에 대한 것은 아니나 서적표지에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서적발매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서울 민지법 82.7.21. 결정(언론중재 4 호 p.140)이 있다. 이것은 특히 후술할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정의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7) 지홍원, 전계논문 p.223; 안용교 전계논문 pp.10~11.
- 8) 千種達夫, 「인적손해배상의 연구(상)」, 유비각, 1974 년, p.41.
- 9) 신문편집관계법제연구회편, 「법과 신문」, 일본 신문협회, 1972 년, pp. 163~208 은 피해자의 양태에 따른 명예 ·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 10) 대법, 65. 11. 30. 65 다 1707, 80. 2. 25. 79 다 2138 · 2139 판결.
- 11)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전계 「법과 신문」, pp.200~206; 伊藤正己편, 「현대손해배상법강좌」 2, 일본평론사, 1972 년(이하 현대강좌로 줄임), p. 115 참조.
- 12) 지홍원, 전계논문, p.226.
- 13) 다만 과실이 없다 하여 면책되는 수는 있을 것이다.
- 14) 기사표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문제는 「언론중재」 1982, 가을특집 I "보도와 헤드라인" 및 pp.136~141 참조
- 15) 사진설명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사례로는 「언론중재」, 1982, 가을, p.104 참조.
- 16) 보도에 의한 침해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전계 「법과 신문」 pp. 133~154 참조.

- 17) 전장 「법과신문」, p. 158.
- 18) 지홍원, 전계논문, p.230.
- 19) 모델소설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전계 「현대강좌」 p201 참조.
- 20) 전계 「법과신문」, p. 160.
- 21)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1981 「언론중재」, 1981, 겨울, pp.20~21;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2, 겨울, p. 16 참조.
- 22) 전계 「법과신문」, p.129.
- 23) 프라이버시권의 유형 등 구체적 내용은 양건, "사생활의 관리와 표현의 자유",
「법률신문」 1420 호: 전계 「현대강좌」, p. 53 참조.
- 24) 지홍원, 전계논문, p.238.
- 25) 전계 「법과신문」, pp. 130~ 131.
- 26) 加藤一郎편, 「주석민법」 (19), 유비각, 1965 년, p.183.
- 27) 전계 「현대강좌」, p. 187 참조.
- 28) 竹田揔, 「명예, 프라이버시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연구」, 주정서점, 1982 년, p.153.
- 29) 竹田揔, 명예훼손에 기초한 소송, 「실무민사소송 강좌」 10, 일본평론사, 1978 년, p.
234.
- 30) 곽윤직, 「채권각론」 (전정판), 법문사, 1978 년, p.682.
- 31) Deutsch, Haftungsrecht I, 1976 년, pp.471~476. 반대설 중 인격권침해의 경우에는
잠재적 · 재산적손해의 전보가 위자료의 유일한 기능이라는 견해(Schwerdtner, Das
Persönlichkeitsrecht in der deutschen Zivilrechtsordnung, 1977 년, pp.276~290)가 주목된다.
- 32) Henke, Schmerzensgeldtabelle, 1969 년, p.6.
- 33) Deutsch, 전계서, pp.474~476.
- 34) 전계 「법과신문」, p.238; 竹田揔, 전계서 p.171.
- 35) 竹田揔, 전계서, p. 171.
- 36) 竹田揔, 전계서, pp. 171~172.
- 37) 미국의 배상금수준은 「언론중재」, 1982, 봄, pp.112~113 참조.
- 38) Deutsch, 전계서, p.474.
- 39) Schwerdtner, 전계서, p. 271.
- 40) 竹田揔, 전계서, p. 173.
- 41) 전계, 「법과신문」, p.239.
- 42) 다만 田中康久(坂井芳雄편, 「현대손해보상법강좌」 7, 일본평론사 1974 년 p.279)는
피해자의 재산상태나 과실 등은 원칙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 43) 전계, 「법과신문」, p.237,
- 44) 이 경우 위자료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태본지판소 55. 3. 24. (판례시보 964 호
p.108)이 있다.
- 45) 千種達夫, 위자료액의 산정, 총합판례연구총서 민법 4, 유비각, 1957 년, pp. 189~191.
- 46) 주 10)의 판결 참조.
- 47) 지홍원, 전계서, p.232.

- 48)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죄광고청구가 인용된 사례로는 대법 80. 2. 26 79 다 2138·2139 판결이 있다.
- 49) 竹田揔, 전게서, p. 174.
- 50) 전게, 「법과신문」, pp.241~242; 竹田揔, 전장서, p. 174.
- 51) 일본최고재, 소 31. 7. 4 판결(민집 10 권 7 호, p.785)
- 52) 宮田豊,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의 강제」, 별책 주리스토 헌법판례 3 판, 유비각, 1977 년, p.38; 기대통, 사죄광고, 「현대강좌」 p.26.
- 53) 宮田豊, 전게논문, p.38.
- 54) 기대통, 전게논문, p.265.
- 55) 竹田揔, 전게서, pp. 174~175.
- 56) 다만 기대통(전게논문 p.263)은 취소광고나 기사정정의 법적강제도 위헌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손해배상의 원칙적 방법인 원상회복 겸 물권적청구권의 유추적용에 의한 방해배제로서 「사실주장의 취소」만이 인정된다(Schwerdtner, 전게서, p.313).
- 57) 기대통, 전게논문, p.264.
- 58) 지홍원, 전게논문, p.234.
- 59) 법인의 사죄광고청구가 인용된 사례로 주 48)의 판결이 있다.
- 60) 지홍원, 전게논문, p.234.
- 61) 전게, 주석민법(19), p.373.
- 62) 지홍원, 전게논문, p.235.
- 63) 전게, 「법과신문」, p.242~243.
- 64) 전게, 주석민법(19), p.374.
- 65) 기대통, 전게논문, p.245.
- 66) 竹田揔, 전게서, p. 186.
- 67) 동경지판, 소 43. 11. 25 「판례시보 537 호」, p.28.
- 68) 기대통, 전게논문, p.258.
- 69) 竹田揔, 전게서, p.187; 기대통, 전게논문 pp.257~258.
- 70) 전게, 법과신문, p.243 ; 竹田揔, 전게서, p.185.
- 71) 일본최고재, 소 46. 7. 22 판결, 전게 「법과신문」, pp.243 ~244.
- 72) 지홍원, 전게논문, p.235.; 竹田揔, 전게서, p.187.
- 73) 지홍원, 전게논문, p.235.; 竹田揔, 전게서, p.187.
- 74) 지홍원, 전게논문, pp.222~239.; 기대통, 전게논문, pp.249~250.
- 75) 五十風清, 田宮裕 전게서, pp.72~73.
- 76) 그밖에 「언론중재」, 1982, 여름, 특집 II "언론에 있어서의 반론권"; 安次富哲雄, 「신문사에 대한 반론문게재청구권」, 판례타임즈, 439 호. p.131 참조.
- 77) 지홍원, 전게논문, p.218.; 竹田揔, 인격권침해와 차지청구, 「현대강좌」, p.294.
- 78) 전게, 「법과신문」, p.244.
- 79) 성명권에 기한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현대강좌」, p.241 참조.
- 80) 출판에 대한 금지청구의 선례로서는 주 6)의 가처분결정이 있다.

- 81)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299~300.
- 82) 時岡弘편, 「인권의 헌법판례 3 집」, 성문당, 1981 년. pp.163~166.;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00~302.
- 83)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00~301.
- 84) 五十嵐清 · 藤岡康宏, "인격권침해와 차지청구", : 「판례시보」 599 호, p.108.
- 85) 동경고결, 소 45. 4. 13, 「판례시보」 587 호, p.31.
- 86)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00~306. ; 時岡弘편, 전게서, p.167.
- 87) 동경지결, 소 45. 3. 14, 「판례시보」 586 호, p.41.
- 88)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01~305. ; 時岡弘편, 전게서, p.167.
- 89)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06~307.
- 90) 이 설에 영향을 준 미국판례법상의 「현실적악의」의 법리와 그 완화경향에 관하여 「언론중재」, 1982, 가을, p.74 및 pp. 112~121 참조.
- 91) 時岡弘편, 전게서, pp.168~169.
- 92) 時岡弘편, 전게서, pp.170~171.
- 93) 五十嵐清 · 藤岡康宏, 전게논문, p.110.
- 94)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II 11. Aufl, 1977 년, PP.611~616.
- 95) 지홍원, 전게논문, p.220.
- 96) 竹田捻, 주 77)의 논문, p.296.
- 97) 時岡弘편, 전게서, pp. 163~166.; 左藤幸治, 프라이버시침해와 차지명령」, 별책 주리스토, 헌법판례백선 I, 유비각, 1980 년, p.71.
- 98) 阪本昌成, "표현의 자유와 사전억제", 「법학세미나 326 호, p.81.
- 99) 竹田捻, 주 77)의 논문, p.308.
- 100) 지홍원, 전게논문, p.220. ; 竹田捻, 주 77)의 논문, p.312.
- 101) 지홍원, 전게논문, pp.220~221. ; 竹田捻, 주 77)의 논문 pp.312~313.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독일 쾰른 대학 연수 제 15 회 사법시험합격
- 서울 민사 지방법원판사
- 현재 법제처 파견근무